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8. 28(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8. 12.

나. 제안자 : 박승희, 정창일, 공병건, 허준, 최용덕, 박종우, 안영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8. 13.

라. 상정일자 : 2014. 8. 28.(제21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박승희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6항 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승희 의원 등 8명이 발의하여 2014년 8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내용

- 안 제20조제6항에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동 특별휴가는 1996년 3월 29일 신설되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했던 제도였으나,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자로 도입됨에 따라 휴무일이 확대되어 2005년 12월 28일 장기재직휴가조항이 폐지되었음.

- 그러나, 특별휴가는 현재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 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자기계발 기회부여, 사기진작, 복지향상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재충전의 기회 및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 제도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가 실시될 경우 연간 사용가능 연가일수 21일을 포함하면 최대 31일의 휴가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기존의 연가일수를 포함하면 31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몰려 쓰게 될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됨

(답변) 직원상호간의 협의 하에 연가도 사용하고 있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임신출산 관련 셋째이상은 장기간을 쉬어도 근무하는 기간으로 산정한다는 것인데,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 둘째부터도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은?

(답변) 자녀 둘을 키우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함. 관련법을 검토해보겠음

5. 토론요지

- 가. 찬성 : 최용덕,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위원
-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 붙임 :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p>	<p>제20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 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 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 제7조제2항에 의한다.</u>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 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 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p>

관계법령 발취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9조(위임규정) <p><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 복무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3(특별휴가) <p>“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 특별휴가는 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교육위원회 박 승 희 의원